

'20년 9-10월 주요국 지재권 동향

《 목 차 》

I. 미국 p.2-3

- ① USPTO, AI 및 지재권정책에 관한 공중의견 보고서 발표
- ② USPTO, AI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한 AI출원동향 분석
- ③ USPTO, IT인프라 개혁을 통한 디지털 혁신 시도
- ④ USPTO, 미국의 혁신 증대를 위한 위원회 발족
- ⑤ 백악관,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조품 거래 금지에 관한 각서 발표
- ⑥ 前USPTO 국제협력정책국장 미국저작권청장으로 취임

II. 중국 p.4

- ① CNIPA, 특허법 개정 발표
- ② 베이징시, 지재권 보호강화에 관한 행동방안 발표
- ③ 중국·EU, 중·유럽 지리적 표시협정 체결
- ④ CNIPA, 상표등록 기록물 관리방법 제정

III. 일본 p.5-6

- ① 일본 정부·특허청, 디지털 전환 정책 가속화
- ② JPO, 기본문제 소위원회 설치 및 회의 개최
- ③ JPO, 특허법에 비밀특허제도 도입 검토
- ④ JPO, 아세안 특허청과 화상 청장회의 개최
- ⑤ 일본, 영국과 지재권보호를 포함하는 경제연계협정(EPA) 체결

IV. 유럽 p.7-8

- ① 유럽,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중점전략추진
- ② 단일특허제도, 통합특허법원협정 논의동향
- ③ EU의회, AI 기술 발전을 위한 지재권 권고안 채택

V. WIPO p.9

- ① WIPO, 판결문 검색 서비스 시작
- ② WIPO, AI와 지식재산 가상 전시회 개막

I. 미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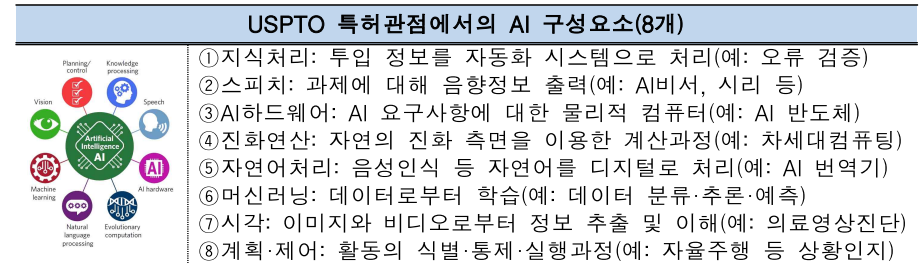
① USPTO, 'AI 및 지재권정책에 관한 공중의견' 보고서 발표

- USPTO는 AI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된 지식재산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발간('20.10.6)
- '19.8월부터 '20.1월에 걸쳐 특허와 비특허부분(상표, 저작권, 영업비밀, DB보호 등)으로 구분하여 AI 관련 법·제도적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질문* 및 의견수렴
 - * 각국 특허청, 법조계, 무역기관, 학계, 로펌, 기업 전문가들이 197개 의견을 제출함

분류	응답자 답변내용
일반론	① AI에 대한 유니버설한 개념 정의가 없음 ② 현재 AI 기술수준은 아직 인간과 유사 지능을 가진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음 ③ 현행 지재권법은 AI의 진화에 대응되도록 마련되어 있음
특허 관련	① AI 발명은 '컴퓨터프로그램 관련발명'으로 취급됨 ② AI 발전이 특허법상 '통상의 기술자'의 판단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③ AI가 엄청난 양의 선행기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음
특허 외 지재권 관련	① 현행 지재권법은 AI 진화에 대응되도록 되어 있으며, 계약법 등이 AI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을 채울 수 있을 것임 ② AI는 상표심사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것임 ③ AI 훈련을 위한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법 위배일 수 있음

② USPTO, 미국 특허를 통해 살펴본 AI기술 확산추이 발표

- (방법) 특허관점에서 AI 구성요소를 8개로 분류(이중 1개 이상 포함시 AI특허로 정의), 기계학습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국특허('76~'18년) 분석



- (AI 출원) '02~'18년 기간 중 AI 특허출원건수 2배 증가(약3만건→6만건 이상)
 - * 美 전체 특허출원 중 AI 출원 차지 비중은 7% 증가 : ('02년) 9%→('18년) 16%
- (AI 활용) 전 기술 분야에서 AI 활용 비율 증가
 - * 미국에서 AI(구성요소)를 활용하여 받은 특허 추이 : ('76년) 1%→('18년) 25%
- (지역 확산) 州별 AI 발명가/특허권자 보유 특허 확산
 - ('76~'00) 대도시, 전통적인 기술거점 지역(실리콘밸리 등) 중심으로 AI특허 분포
 - ('01~'18) 기존 기술거점지역 강세 속에 미국 전역 확산 및 주별로 다양한 분야에 AI 활용 추세
 - * (오하이오) AI기술을 활용하여 전화통화 품질 평가, 휴대전화 데이터분석 및 직원성과 모니터링 (노스다코타) AI기술을 활용하여 곡물 샘플 이미지화 및 파손여부 측정하여 수확 결함 감소

③ USPTO, IT인프라 개혁을 통한 디지털 혁신 시도

- 미국특허청은 '18년 인터넷 시스템 중단사고*를 계기로 IT시스템 재정비 추진
 - * 미국 특허청 인터넷 시스템(PLAM, Patent Application Location and Monitoring System)이 오래된(20년 이상) 플랫폼에서 가동되던 중 데이터베이스 손상으로 며칠간 운영 중단
- 서버플랫폼 교체* 등 IT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인프라의 보안·안정성 향상**
 - * 구 서버에 비해 1,000배 빠르고 20배 효율적이라 평가
 - ** 美특허청 직원(12,652명) 전원 재택근무중('20.3월-현재)
- IT부서를 과정(프로젝트) 위주에서 결과물 위주로 개편하여, 각 팀*이 기획에서 운영·유지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 책임
 - * ①특허, ②상표, ③백오피스(재무팀, HR, 법무 등), ④IT 및 인프라 등 4개 팀 구성·운영

④ USPTO, '미국의 혁신 증대를 위한 위원회' 발족

- 미국에서 발명, 혁신, 기업가 정신 증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미국 혁신 증대를 위한 국가위원회(National Council for Expanding American Innovation) 발족('20.09.14)
 - * 혁신을 촉진하고 소수자 단체의 발전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창립을 의회 승인('19.12월)
- (구성) 의장(로스 상무장관), 부회장(이안쿠 특허청장), 그 외 산업계·학계·비영리기관 대표
- (향후계획) 소수자 단체의 발명가, 특허권자, 기업가 등의 참여를 촉진하고, 포용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할 계획

⑤ 백악관,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조품 거래 금지에 관한 각서 발표

- 트럼프 대통령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위조품 거래 금지에 관한 각서* 발표('20.10.13)
 - * Memorandum on Stopping Counterfeit Trafficking on E-Commerce Platforms Through Fines and Civil Penalties
- (배경) 위조품 거래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,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위조품 거래의 구매자, 판매자 중간에서 핵심 기여자 역할을 함
- (주요내용) 벌금 및 민사처벌 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 거래를 금지

⑥ 前USPTO 국제협력정책국장 미국저작권청장으로 취임

- 前국제협력정책국장 쉬라 펄머터(Shira Perlmutter), 美저작권청장 취임('20.10.26)
 - '12년부터 USPTO 국제업무 총괄하는 국제협력정책국장으로 9년간 근무
- 신임 국제협력정책국장 임명시까지 現정책부국장 메리 크리타리스(Mary Critharis)가 국제협력정책국장 대리 예정

II. 중국

① CNIPA, 중국 특허법 개정 발표

- 특허디자인 보호 강화, 특허 활용 촉진 등 개정*(2021.6.1.시행)
 - * 특허법 제정('84.3월) 이후, 제1차('92.9월), 제2차('00.8월), 제3차('08.12월) 개정에 이은 제4차 개정

< 중국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 >

구분	주요 개정내용 (조문)
특허 보호 강화	특허심사에 따른 의약품 존속기간의 보상제도 신설(제43조)
	고의적 침해에 대한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, 법적 배상액 확대(5배) (제71조)
특허 활용 촉진	직무발명 활용 촉진 (제6조 및 제15조)
	특허 개방허가제도 (특허 라이선스) 도입 (제50~52조)
디자인 보호 강화	부분 디자인 제도 신설 (제2조)
	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 으로 연장 (제42조)

② 베이징시, '지재권 보호강화에 관한 행동방안' 발표

- 중국 베이징시, 지방정부 차원의 지재권 보호강화방안 발표 ('20.9.1)
 - (구성) 지재권의 엄격한 보호, 신속 보호, 동등 보호 등 6개 분야 26개 행동계획으로 구성
 - (향후계획)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베이징시의 지재권 보호 개선의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으며, 2025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

③ 중국·EU '중·유럽 지리적 표시협정' 체결

-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독일 총리, 유럽이사회 위원장, 유럽연합위원회 위원장과 화상회견을 갖고, '중·유럽 지리적 표시협정'의 정식 체결('20.9.14.)
 - * 중·유럽 양측 각각 275개, 총 550개 지리적 표시가 포함됨
- 유럽연합은 이전까지 지리적표시 협정에서 농산물, 식품, 주류만 포함시켰으나, 이번에 최초로 중국 화선지(선지), 비단공예품(촉금) 등 농산물, 식품, 주류 이외 제품 포함

④ CNIPA '상표등록 기록물 관리방법' 제정

- 상표등록 편리화 및 상표등록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'상표등록 기록물 관리방법' 제정*('20.8.20. 시행)
 - * 중국은 이전까지 1987년 제정된 <상표등록 기록물 관리 임시방법>을 시행하였음
- (구성) 상표등록 기록물의 정의, 상표등록 서류자료의 분류보존 범위 및 보관기한, 상표등록 기록물 이용, 법률책임 등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
- (기대효과) 기록물의 열람, 복사신청 자격이 사건 당사자에서 누구나로 확대되어, 국가비밀, 영업비밀 및 개인의 사적비밀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누구든지 기록물의 열람, 복사가 가능해짐

III. 일본

1 일본 정부 · 특허청, 디지털 전환 정책 가속화

1 일본정부, Society 5.0 개념*하에 코로나 위기를 일본사회를 디지털 사회로 단번에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

※ 수렵사회(1.0) → 농경사회(2.0) → 공업사회(3.0) → 정보사회(4.0)

<일본 디지털사회 전환 추진계획>

구분	주요내용
지적재산추진계획 2020 (20.5.17 발표)	· 인재양성, 산학협력, 지역·중소기업 지원, 데이터 활용촉진 위한 분야간 연계 강화, 전략적 표준 활용,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 정비
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 (20.7.17 각의결정)	· 통신데이터 기반 인프라 정비, 행정시스템 혁신, Society 5.0 구현, 과학기술혁신의 원천인 연구역량 강화 등
디지털청 신설 계획 (20.9.18. 발표)	· '21년 가을까지 디지털 행정 강화를 위해 행정절차 온라인화, 마이넘버(주민등록번호) 보급 등 추진예정

2 일본특허청, 인공지능기술과 특허제도의 조화를 위한 정책 추진

- AI 기술 이용 특허행정 고도화를 위한 'AI 기술의 검토결과 및 활용계획' 발표 (20.7.17.)

* (주요내용) 선행기술조사, 특허분류부여, 전화(질문) 대응 등에 AI 기술 활용

- 'AI·IoT 기술 시대에 맞는 특허제도의 방향성' 중간보고서* 발표(20.7.10)

* 데이터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데이터침해를 '직접침해(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침해)'와 '간접침해(발명과정에서의 데이터 침해)'로 구분하고,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

2 JPO, '기본문제 소위원회' 설치 및 회의개최

○ 일본 국내출원 감소 및 코로나-19에 대응하여 산업재산권제도 전반적 검토를 위해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산하 「기본문제 소위원회」 설치 발표(20.9.25)

* 특허청 세입·세출 구조와 중장기 세입구조 개편 등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예산 문제도 검토 예정

○ 제1회 회의 개최(20.10.9, 특허청장 및 담당자, 외부위원 8명 참가)하고 회의록 홈페이지에 공개

<제1회 기본문제 소위원회 회의 주요내용>

주제	주요내용
특허출원감소	· 日특허청은 기업이 출원을 염선하고 있어, 출원감소에도 심사청구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 않으므로, 특허출원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었다고 평가 · 외부위원은 日시장의 매력 감소와 일본에서 특허권 행사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기
절차 간소화	· 서류 서명·날인, 대면 구술심리 등 日특허청의 복잡한 절차 문제 제기
특허특별회계	· 세출의 세입초과 상황에서 향후 청사리모델링·시스템추진계획에 따른 더 큰 적자가능성 · 수수료 최적화 검토 필요성 (PCT 경우 지출이 수수료 수입의 3배)

3 JPO, 특허법의 비밀특허제도 도입 검토

○ 일본특허법상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개정 검토 착수(8.12)

- 우리나라 특허법 제41조에 상응, 일본은 과거 첨단기술 정보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동 제도를 운영하였으나, '48년 전쟁포기 방침에 따라 폐지

※ 우리나라 특허법 제41조(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)는 국가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해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규정

○ (도입배경) 안보 관련 첨단기술 정보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* 동 제도 도입 추진

* 특히 안보 분야 일본 최첨단 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 검토 추진

○ (추진계획) 제도도입 사전검토 단계로 '21년 정기국회(1월) 법률 개정을 추진 및 '22년 시행 예정

4 JPO, 아세안 특허청과 화상 정상회의 개최

○ 올해 두 번째 일본-아세안(ASEAN*) 특허청 청장회의(화상) 개최(20.9.10)

* 일-ASEAN 특허청장회의는 2012년부터 개최. 올해는 지난 7-8월에 제10회 회의(화상)를 개최하였으며, 이번 회의는 11회가 아닌 '제10회 특별회의'로 지칭

○ 동아시아-아세안경제연구센터에 의한 'ASEAN 각국의 AI 관련 발명의 특허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'에 관한 중간보고 실시

* JPO의 심사 핸드북에 게재 된 AI 관련 발명의 사례를, ASEAN 각국의 법규 등에 따라 판단하면 어떤 심사 결과가 되는지 분석하는 조사

5 일본, 영국과 지재권보호를 포함하는 경제연계협정(EPA) 체결

○ 일본-영국 정부 지재권보호 규정을 포함한 경제연계협정(EPA) 서명(20.10.23)

<일본-영국 EPA 지식재산권 규정 사항>

구분	규정 사항
특허	· 일본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영국에서 다른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
상표	· 일본이나 영국기업의 브랜드 등을 제3자가 양국에서 악의적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당국이 출원단계에서 취소할 수 있음
디자인	·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간으로 설정 * 일본-EU의 EPA에서 합의한 20년보다 길게 설정된 것으로, 지재권보호 강화의지
집행	· 상표권 침해 라벨·포장지, 영화관 상영작품을 불법촬영하여 웹 등에서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부정행위 방지 강화

IV. 유럽

① 유럽,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중점전략추진

① [EU 집행위원회] EU 디지털 정책안 발표(2020.2월)

- 디지털 전환을 미래변화의 축으로 보고, 데이터전략과 인공지능백서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**EU 디지털 정책안** 발표

<EU 디지털 정책안 주요내용>

구분	주요내용
유럽 데이터 전략	· 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'유럽 데이터 단일시장' 구축
인공지능백서	· EU의 AI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유로(약25조 8,700억원) 예산 투입 예정

- 올 하반기까지 **디지털 서비스법(Digital Service Act)** 법제화 목표(2020.12)

② [EPO] AI 기반 심사시스템 운영

- **AI 전담조직(Data Science Team)** 설치, **AI기술을 선행기술검색·기계번역 등에 활용 중***
 - * 인공지능경망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을 학습하여 심사대상 출원에 대해 약 60개 선행 기술문헌을 자동 제시 / 구글과 협업하여 38개 언어 인공지능경망 기계번역 제공
- **AI가 발명한 특허의 권리귀속 이슈*** 관련하여, **EU는 AI를 발명자로 지정한 특허출원에 대해 발명자 지정과 관련한 형식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결정(2019.12월)**
 - * EPO 보고서('19.2월)는 AI 발명특허 권리귀속 이슈에 대해 현행 유럽 법제는 적합하고 AI가 법률의 변화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함을 언급
- NET(New Emerging Technology)/AI를 연구하기 위한 EU AI 기술센터를 베를린에 설립하고, 베를린을 AI 허브센터로 성장시킬 계획

③ [EUIPO] 전략계획 2025 시행

- 유럽기업과 시민을 위한 지식재산가치(Delivering IP Value for Business and Citizens in Europe)를 비전으로 **전략계획 2025*** 시행(2020.7월)
 - * (주요내용) ① 역내시장을 위한 상호 연결되고,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IP시스템, ② 고객중심 서비스 강화, ③ 역동적인 조직관리 및 혁신적인 업무환경 구축
- AI·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심사·지원 업무, 고객 정보제공, 지재권 집행경영 등에 활용할 계획

② 단일특허제도, 통합특허법원협정 논의동향

- 단일특허제도*/통합특허법원협정 이행**과 관련하여 브렉시트로 인한 변화 논의
 - * 유럽특허청에 영어, 프랑스어, 독일어 중 1개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해 특허로 등록되면 27개 EU회원국 전체에서 특허권리 행사가 가능한 제도
 - ** 단일특허제도에 따라 통합특허법원을 파리(본부), 런던(화학, 바이오), 뮌헨(기계)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나,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 논의 진행 중
- **(영국)** 브렉시트 후속조치로 단일특허제도 참여 철회를 발표(20.7월)한 것에 대한 법적효력
 - 유럽의회는 '단일특허제도는 EU 회원국에게만 해당되는 것' 이유로 영국철회의 법적효력 인정
- **(독일)** 브렉시트 이전 합의된 통합특허법원협정 내용 중 뮌헨(지부) 설치 관련동향
 - 예정대로 뮌헨(지부)를 설치하기 위한 통합특허법원협정 이행관련 신규 법안이 독일 연방하원에 제출(20.9.28)되어 관할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연방의회 표결 예정
- **(통합특허법원 신규지부 지정)** 런던 담당(화학, 바이오) 소송을 한시적으로 뮌헨파리로 이관 예정
 - 이탈리아, 프랑스, 네덜란드 등이 신규지부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가운데, 일정지역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이며, 향후 회원국 협의를 통해 신규 지부 확정 예정

③ EU의회, AI 기술 발전을 위한 지재권 권고안 채택

- EU의회는 **AI법안*에 포함되어야 할 윤리·책임·지재권 관련 권고안 채택(10.20.)**
 - * EU의회는 디지털경쟁력 확보 및 역내 AI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법·제도 정비와 전략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 중('21년 초까지 AI법안 마련 예상)
- **(주요내용)** AI중요성, AI규제형태, IP이슈, AI정의, 기업지원, IP 심사·집행, AI인프라 등

<EU 지재권 권고안 주요내용>

구분	주요내용
AI 중요성	· 디지털 산업주권 회복, 산업정책 구조개혁 위한 AI 중요성
AI 규제형태	· 개별국 수준이 아닌 EU 차원에서의 법률 형태로 규정 필요
IP 이슈	· AI 관련 균형있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
AI 정의	· AI 도움받은 창작물과 AI 창작물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부정적
기업지원	· AI기술은 빅데이터에 크게 의존, 중소기업·스타트업에 대한 DB 지원
IP 심사·집행	· AI기술 활용은 품질·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, 인간 역할 대체는 불가
AI 인프라	· EU 전체에 걸친 인프라·보안 강화 필요

- **(향후계획)** AI 운용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책임제, 창작자 보호방안 등이 포함되어 향후 AI법안에 영향 줄 것으로 판단

V. WIPO

① WIPO, 판결문 검색 서비스 시작

- 전세계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신규 플랫폼인 'WIPO Lex-Judgement' 서비스 시작'(20.9.24)
 - * 한국 특허법원(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)는 WIP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결문 공유에 합의(20.8.10.)
- (배경) 초국가적 지재권 분쟁 증가에 따라 회원국 법률 구제에 관한 이해 향상 및 각국 법관 직면 공통과제 공유를 위한 국제 지식재산 사법행정 서비스 개시
- (주요내용) IP 법리 전달을 위한 선도적인 판결 선정 및 세부사항 정보 무료 제공
- (현황) 현재 한국, 중국, 브라질, 칠레, 코스타리카, 멕시코, 페루, 자메이카, 호주, 스페인 총 10개국의 총 400개 판결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,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참여국과 판결문 정보 확장 예정



② WIPO, 'AI와 지식재산' 가상 전시회 개막

- 'WIPO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가상전시회(WIPO AI and IP, A Virtual Experience)' 개막
- (주요내용) 360도 VR 카메라로 촬영된 WIPO 도서관을 배경으로, AI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체험 가능
- (일정) '20.9.18.~12.18.까지 3개월간 개최
- (이용방법) 가상전시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생동감 넘치는 실감 콘텐츠 감상
- (콘텐츠) AI와 IP 정책에 관한 전문가 발표, AI가 창조하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예술(Art), 음악(Music), 기술(Technology) 및 엔터테인먼트(Entertainment)에 활용된 사례 등을 체험하는 부스 마련

